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8. 30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제출일자 : 1996년 8월 21일

회부일자 : 1996년 8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1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96. 8. 30)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 흥 일 성)

가. 제안이유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명 변경

관련법령 및 기타 규정·규칙에 따른 사무 조정

나. 주요골자

- 당연직 위원중 각 국장을 각 실국장,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직명 변경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는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처리하므로 삭제
- 간행물 발간은 시무관리 규정에 의거 간행물 발간 등록으로 대체됨으로 삭제
-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 군수 승인사항임으로 삭제
- 위원회를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
-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의 관련분야 정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재평)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명이 변경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법령 및 기타 규정·규칙에 따른 사무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제2조 제3항중 "각 국장과 기획담당관"을 "각 실국장과 기획관"으로 하고,

둘째, 제3조 제3호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을 "10억원 이상 소요 예산 사업의 투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동조 제4호 주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는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5호 "이의 신청과 소원의 심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므로 삭제", 제6호 "국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에 의거 권

한 재위임 사항으로 삭제

제9호 "간행물 발간"은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간행물 발간 등록으로 대처됨으로 삭제

제11호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군수 승인사항임으로 삭제하고.

제14호 중 "유통산업근대화"를 "유통산업협리화"로, 제20호 "에너지 소비절약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 에너시 중요시책 및 산업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셋째. 제4조 제1항중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위원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한다."로 하고.

넷째. 제3조 제12호의 별표 도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의 관련 분야를 직제개편 등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라 변경된 직명과 내용으로 현실에 맞게 도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효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 6명, 찬성 6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붙임 서류

- 충청북도 정조정 위원회 조례 중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